

<p>199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p> <p>□ 예산안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채 발행과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등 목적지정 지원금을 계상하고, 학생수용시설확충 및 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비 계상을 위해 기정 예산액 2조 8,576억 7,501만 1천 원 대비 2.7%인 769억 202만9천 원이 증액된 2조 9,345억 7,704만 원 규모로, ○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이 242억 4,997만 6천 원(1.6%),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이 지방채 발행액 520억 원을 포함한 525억 1,705만3천 원(7.4%), 주민부담수입이 1억 3,500만 원(4.4%)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 세출예산은 교육행정비 23억 1,969만3천 원(5.0%), 교육사업비 6억 598만 원(3.2%), 학교비 56억 4,687만5천 원(3.2%), 사학지원비 125억 9,662만8천 원(3.7%), 시설비 554억 6,842만8천 원(24.8%) 및 예비비 2억 6,442만5천 원(5.8%)이 각각 증액 편성됨. <p>□ 세입 예산부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입예산안은 770억 2,802만9천 원이 증액된 반면, 1억 2,600만 원이 감액되어 기정 예산 대비 총 769억 202만9천 원이 증액된 2조 9,345억 7,704만 원 규모임. ○ 지방채 발행은 농협으로부터 520억 원을 2회에 걸쳐 연리 8.25%, 1년 거치 2년 상환조건으로 차입하는 것으로, 이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항으로 추경 예산안에 포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음으로써 확정됨. ○ 교육부로부터 교부받은 교부금, 지원금 등 목적지정경비가 245억 7,840만4천 원이 증액되었고, 이 중 특별교부금 69억 4,198만 1천 원, 증액교부금 100억 6,500만2천 원, 국고지원금 73억 6,899만3천 원, 국민체육공단지원금 1억 3,500만 원, 재해보상금 6,742만8천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광희초등학교 건물피해보상금 4억 4,962만5천 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 은평복지학교 증축계획 취소에 따른 국고지원금 반납에 필요한 1억 	<p>2,600만 원이 감액됨.</p> <p>□ 세출 예산부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출예산은 총 2조 9,345억 7,704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69억 202만9천 원이 증가된 규모임. ○ 목적이 지정된 우선사용액 편성액은 245억 7,840만4천 원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교부금사업은 서울정애학교설립 27억 9천만 원, 학교교육계획서 공모 우수학교 지원 17억 5,950만 원, 교과교육연구회 연구비 지원 10억 3,521만2천 원 등 13건에 69억 4,198만1천 원, - 증액교부금사업은 실직자 등 경제사정 곤란자 자녀 중·고등학비지원비로 1건에 100억 6,500만2천 원, - 국고지원금사업으로 설업계고교 내실화·특성화사업 41억 4,708만7천 원, 방학중 결식학생지원비 11억 8,884만 원 등 19건에 73억 6,899만3천 원, - 국민체육진흥공단지원금사업으로 학교운동경기부 및 체육계학교 육성지원비로 1억 3,500만 원, - 재해보상복구사업으로 대림초등학교 재해복구비로 6,742만8천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됨. ○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학교시설사업을 위하여 지방채발행에 의하여 조달할 5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6개 학교 신설에 296억 1천만 원, 12개 학교 110개 교실 증축에 8억 4,800만 원, 21개 교실개축비로 129억 4천만 원, 39개교 노후화장실 보수비로 86억 2백만 원을 각각 증액한 것임. <p>□ 종 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은 학교신축, 교실증·개축 등 학교수용시설 및 교육여건개선사업 등이 시공중 중단되었거나 시급히 추진되어야 함에도 교육재정이 부족하므로 재원조달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조, 제8조 및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52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고, 국가로부터 교부금 등이 243억 7,597만6천 원이 증액교부되어 이를 지정된 목적에 우선사용토록 하려는 것임 ○ 부족한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는 것은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의
--	--

중요성과 시급성에 비춰볼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나, 다만, 지방재발행은 지난 세1회 추경시 기채액이 3,666억7백만 원이었고, 이번 세2회 추경시에도 520억원을 기재할 경우 '99년도에만 4,186억7백만 원의 지방채가 발행되는데 2000년도에도 2,280억원 규모의 추가발행계획이 있어 이는 교육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이자와 원금의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학교의 신설, 중·개축 및 노후화장실 보수를 위한 520억원의 시설비 예산편성시 사업시행의 필요성과 긴급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이 외에 은평북지학교 교실증축사업에 배정된 국고지원금 1억 2천6백만원은 학교측의 사업포기로 인하여 국고로 반납해야 하는 것으로, 이는 학교측과 교육청측의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미흡으로 보이므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사업의 타당성이나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법령개정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또한 시교육청 자체의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민원인의 행정편의와 학원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정비사항으로는 유해업소와 학원과의 거리 세한 규정완화(안 제2조), 학원 및 교습소의 부세교습횟수 폐지(안 제5조, 제7조), 강사·생활지도사 명단과 수강료 내역을 학원등록시 제출토록 개선(안 제8조, 안 제9조), 보습학원의 교습과정을 재학생의 보충교과목으로 규정하고(안 제3조1항 별표1) 실습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 설

비 및 교구기준을 법령의 교습과정 변경에 따라 조정(안 제8조3항 별표2)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음.

□ 시교육청의 자체 교육규제정비계획에 의한 규제완화사항은

성인대상의 교습시간을 23:00에서 24:00로 1시간 연장(안 제5조), 학원강사의 변경시 통보기일을 강사의 경우 채용시 10일에서 15일 이내로, 해임시 5일에서 15일 이내로 완화(안 제8조), 수강료를 1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변경시에도 시행일 10일 전에서 7일 전까지로 통보기일을 완화(안 제9조) 등의 불합리하고 과도한 행정규제를 자체적으로 정비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시민들이 파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규제를 완전 폐지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거나 학원의 교습과정별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등 과도하게 설정된 시설기준(별표1)을 대폭 완화하고,
- 실습, 실습, 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교습과정별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별표2)도 과감하게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당초 교육청의 규제정비계획에 의하면 위와 같은 규제를 완화토록 하고, 강사·생활지도사의 채용·해임시 통보의무나 수강료 변경시 통보의무도 폐지키로 하였으나 이와 같은 내용들이 본 개정조례안에 반영되지 아니한 것은 교육청의 규제개혁 의지가 미약하고 소극적인 것으로 보임.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5조의 제목 “(학원의 교습시간과 부재회수)”를 “(학원의 교습시간)”으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성인 23:00”를 “성인 24:00”로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